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
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제안이유

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, 현행 제도상 종합적성검사는 필수적으로 참여는 하되, 별도의 시험이 아니라 그 결과가 면접시험에 반영되는 현실을 감안 하여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원활한 채용 시험집행을 위해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(안 제23조제2항)
- 나.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에 반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, 별도의 시험으로 규정되어 있던 종합적성검사를 면접시험에 포함되는 절차로 조정(안 제25조의2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(이하 “시험실시권자”라 한다)는 신규채용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, 시험관리관의 파견 등 신규채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24조제1항 본문 중 “해양경찰청장 또는 제23조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(이하 “시험실시권자”라 한다)은”을 “시험실시권자는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종합적성검사) 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직무수행에

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검정하기 위한 종합적성검사를 실시하며, 검사
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.

② 종합적성검사는 제5차 서류전형 전 단계에서 실시하며, 응하지 않
는 경우 면접시험에 미응시한 것으로 본다.

제26조제1항제5호 중 “종합적성검사”를 “서류전형”으로 하고, 같은 항
제6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호(종전의 제7
호) 중 “제7차시험:”을 “제6차시험: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고해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25조(시험의 방법) 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종합적성검사: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검정

6. · 7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<신설>

제26조(공개경쟁채용시험의 구분 등)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. 다만,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시험의 방법) ①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5. · 6. (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5조의2(종합적성검사) 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검정하기 위한 종합적성검사를 실시하며, 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.

② 종합적성검사는 제5차 서류전형 전 단계에서 실시하며, 응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에 미응시한 것으로 본다.

제26조(공개경쟁채용시험의 구분 등) ① -----

-----.
-----.

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,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5. 제5차시험: <u>종합적성검사</u> 6. 제6차시험: <u>서류전형</u> 7. 제7차시험: 면접시험(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) ② (생략) 제33조(시험의 합격결정) ① (생략) ② <u>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.</u> ③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<u>서류전형</u> <u><삭 제></u> 6. <u>제6차시험</u>: ----- -- ② (현행과 같음) 제33조(시험의 합격결정) ①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연 락 처	(032) 835 - 2236